

광주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773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77305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2024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병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지인

변론 종결 2024. 3. 13.

판결 선고 2024. 6. 12.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20244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8. 11. 7. 접수 제9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쪽 10행 "원고에게"를 삭제하고, 3쪽 7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연경

판사남수진

판사이미주

별지